

②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출물품의 적재확인 절차 신설

- 선박·항공기용품이 아닌 물품으로서 해당 운송수단에 설치 및 사용될 목적*으로 신고수리된 물품의 적재방법 마련 (제48조 제4항)

* B/L 등 운송서류 미발행 → 적재화물목록 작성·제출 불가

- 신고인 등의 적재 확인 요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세관 직원의 확인을 표시하는 적재확인(날인) 신규 제작 (별표8)

③ 수출신고서 작성요령에 INCOTERMS 2020 개정 사항 반영

- 수출신고서 작성요령 (5)-㉔에 기재되어 있는 INCOTERMS 2000과 INCOTERMS 2010을 INCOTERMS 2020으로 수정 (별표)

④ 수출신고와 관련된 관세법, 행정규칙 개정(폐지) 사항 등 반영

- 「관세법」 제250조 제4항 신고취하 승인 기간(1일→10일) 개정 ('20.12.22신설)사항* 반영 (제27조 제2항)

- 수출신고 취하 승인(신청)서 서식을 마련하여 수출신고 정정/적재 기간 승인(신청)서 서식(별지 제2호서식)과 분리 (별지 제2호의2서식)

※ (별지 제2호서식) : 수출신고 정정/적재기간연장 승인(신청)서 (1일)
(별지 제2호의2서식) : 수출신고 취하 승인(신청)서 (10일)

- 기획재정부훈령 「세관특수청인에 관한 규정」 폐지('05.08.18) 반영 (제22조 제1항)

- 비공개 훈령* 적시 조항 및 문구 삭제

* 「수출물품 선별검사에 관한 훈령」

⑤ 수출신고필증 및 간이수출신고필증 서식 하단 기재 사항 변경

- 적재기간이 경과된 반송신고수리물품에 대한 신고수리 세관장의 조치 예정 사항 추가
-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 변경 (portal.customs.go.kr → unipass.customs.go.kr) 사항 반영
- (1)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출신고수리가 취소됨과 아울러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적재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관세법 제251조, 제277조) 또한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(부두,초소,공항)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(※ 반송신고시 표출)

- (1) 반송신고수리일로부터 신고물품을 30일내에 적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국외반출 또는 신고취하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.(관세법 제263조) 또한, 휴대탁송 반출시에는 반드시 출국심사(부두,초소,공항) 세관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(2) 수출신고필증의 진위여부는 관세청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에 조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<https://unipass.customs.go.kr>)

4.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: “붙임”

5. 시행(예정)일자 : 2023년 12월 중

* 제27조제1항 및 제48조제4항 개정내용, 별표 8호,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1호의2 개정 서식은 전산시스템 등 보완 후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시행

6. 의견제출 방법

- 제출처 :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
- 담당자
 - 통관물류정책과 민경욱 사무관(☎042-481-7825)
 - 남기오 주무관(☎042-481-7802)
- 제출기한 : 2023. 0. 0(요일)
- 제출방법 : 이메일(namgo8520@korea.kr), 팩스(042-481-7819)